

2025년도 의정부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의2 및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」 제5조에 따라 “2025년도 의정부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2월 6일

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

1. 대상인원 : 예산범위 내

2. 명예퇴직 대상요건

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 예정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

3. 명예퇴직 제외요건

- 가.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나.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
- 다.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람
- 라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(임기제 공무원은 제외)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(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)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
- 마.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 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 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

4. 명예퇴직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

명예퇴직 신청기간	명예퇴직 예정일
3. 1. ~ 3. 15.	4. 30.
5. 1. ~ 5. 15.	6. 30.
7. 1. ~ 7. 15.	8. 31.
9. 1. ~ 9. 15.	10. 31.
11. 1. ~ 11. 15.	12. 31.

※ 비고 : 조직의 개폐 및 과원,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 협의(퇴직예정일 등)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5. 명예퇴직 신청 방법 및 절차

명예퇴직 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붙임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의회사무국(의회행정팀)에 제출

6. 명예퇴직 대상자의 심사결정 및 통지

- 가. 심사결정 :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당지급 대상자 결정(예산범위 내에서 상위직, 장기근속자를 우선 고려)
- 나. 결정통지 : 수당지급 대상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
- 다. 수당지급 :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

7. 명예퇴직수당 산출내역 <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 별표 1>

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	산정기준
1.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	퇴직 당시(「지방공무원법」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월봉급액의 반액×정년잔여월수
2.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	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× $[60 + \frac{\text{정년잔여월수}-60}{2}]$
3. 10년 초과인 사람	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(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)

비고

1.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 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2.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「지방공무원법」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.
3.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(대통령령 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8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, 이하 이 표에서 “부칙“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,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및 제10조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같은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.
 - 가.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.
 - 나.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(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)의 78퍼센트[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(상당) 공무원은 84퍼센트]의 68.54퍼센트[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12에 해당하지 않는 5급(상당) 공무원은 67.5퍼센트]를 적용한다.

8. 기타사항

「명예퇴직원」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반드시 자필로 작성,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」을 참고하거나 의회사무국 의회행정팀(행정전화 : 2523, 일반전화 : 031-828-252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◎ 신청서 작성방법 ◎

1.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함
2. ③란은 해당란(□)에 √ 표시하고, 특정직공무원(교육공무원 등)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()에 기재함
*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기재
3. ④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(계)급·호봉을 기재함
4. ⑨란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재 하되,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
5.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√ 표시하고,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, 형량을 기재함
6. ⑫ ~ ⑰란은 해당기관의 인사담당관·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기재함(⑭란은 특수경력직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기재)
7. ⑮란은 명예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 되, 월 단위이하 잔여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,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.
8. ⑰란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,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(√ 표시),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

명 예 퇴 직 원

1. 소 속 :
2. 직 위 :
3. 직 급 :
4. 성 명 :

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(정기·수시)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명예퇴직 사유(구체적) :

※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, 직위, 시기(기간) 등 명시

○ 명예퇴직 신청일 :

○ 명예퇴직 희망일 :

※ 명예퇴직 희망일은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」 제6조 제2항에 따른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만 기재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의정부시의회의장 귀하